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213
----------	------

발의연월일 : 2021년 4월 8일

발의자 : 방미숙 의원

1. 제안이유

- 하남시 지역 내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시의 책무 및 지역화훼 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21년 4월 8일 ~ 4월 14일
-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6.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훼산업”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4.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 공간을 만들거나 조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식재”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역화훼산업체의 책무) 지역화훼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쟁으로 지역화훼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 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① 시장은 지역화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시행 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 ①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의 주관부서에 화훼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 화훼산업 활성화 권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꽃·줄기·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
4. 초화류: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풀
5. 화목류: 조경용이나 화분에 심어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나무
6. 관상수류: 잎과 나무의 형태를 관상하기 위해 조경용으로 재배하는 나무
7. 구근류: 종구(구근으로 번식하는 작물의 땅속줄기나 뿌리를 말한다)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8. 종자류: 종자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